

“주거복지 실현전략”

주거복지와 전문인력 양성



양 세 화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전공 교수)

최근 들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 안에서 주거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90년대 후반 다소 생소하게 소개되었던 ‘주거복지’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름이나 건설교통부와 관련된 현행 법령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급기야 2005년 9월 1일에는 건설교통부에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주거복지본부가 신설되었다. 비록 아직까지 ‘주거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주거복지를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정책수행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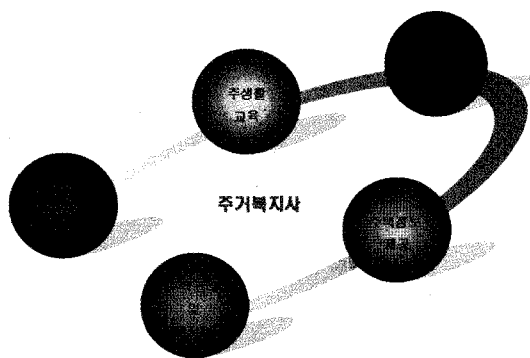
정부의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한국주거학회에서는 2006년 4월 주거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주거복지위원회와의 상호협조 하에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본 글에서는 2006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었던 제 1회 주거복지사 자격연수의 준비과정과 교육내용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복지사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거복지사의 정의와 역할

주거복지사 자격연수에 앞서 우선적으로 주거복지사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역할을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였다. 현재 주거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 기관이나 학계에서는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정의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들을 간략히 종합·요약하면 협의의 주거복지는 시장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데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광의의 주거복지는 전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통한 사회문화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영태, 2006).

이 같은 개념을 토대로 주거복지사를 “주거환경 및 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로 규정하였다. 주거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첫째,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자로서 수요가구 주택의 물리적 성능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주생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의 건전한 주생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주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해 상담한다. 셋째, 주택정보 제공자로서 주택개조 및 주택금융에 관한 정보를

“주거복지 실현전략”



▲ [그림 1] 주거복지사의 역할

제공하고 상담하며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주택관리 및 지원 서비스로써 임대주택의 시설이나 입주민의 생활관리를 도와주고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끝으로 질 높은 주거서비스 보장을 위한 노하우(know-how)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주거복지사의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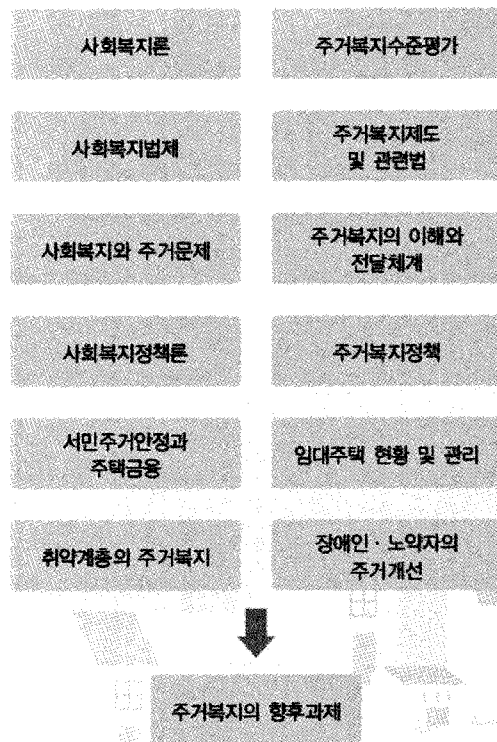
주거환경 평가부터 주거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해내야 하는 주거복지사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적합할까?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명료하였다. 앞서 설정한 주거복지사의 역할은 다분히 주거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주거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주거관련 학과에서의 교과목 이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기에다 주거복지가 국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주거복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주거의 제반 측면에 대한 전문성과 주거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복지사의 자격은 현재 본 학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주택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학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주거복지사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주택상담사를 주거 전반에 관한 generalist로 보았을 때 주거복지사는 이보다는 specialist의 성격을 갖는 자격으로 간주하고 접근하였음을 의미한다. 1998년도부터 본 학회가 주거 관련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증하고 있는 주택상담사는 주택의 제반 측면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거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상담사 자격은 주거학, 주거환경학 등의 주거관련 기초과목(9학점)과 주택법규, 주택상담 등의 심화과목(15학점), 그리고 일정 시간의 실습과 주거관련 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을 때 인증하고 있다. 주택상담사의 이 같은 자격요건은 주거에 대한 전문성 확보라는 주거복지사의 일차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복지사 자격연수

주거복지사 자격연수는 주택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학 관련과목 보다



▲ [그림 2] 주거복지사 연수내용

“주거복지 실현전략”



▲ [그림 3] 제1회 주거복지사 연수모습

는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다. 연수과정은 사회복지 관련 3과목과 주거복지 관련 12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과목당 3시간씩 총 45시간을 5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3과목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수들의 자문을 토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정책론을 포함시켰으며 강의는 모두 사회복지 전공교수들에게 의뢰하였다.

한편 주거복지 관련과목은 현재 주거복지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수준평가, 주거복지제도 및 관련법, 사회복지와 주거문제, 주거복지의 이해와 전달체계, 주거복지정책,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금융, 임대주택현황 및 관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I, II), 장애인·노약자의 주거개선(I, II), 주거복지의 향후 과제로 구성하였다.

연수에는 교수 8명과 대학원생 13명을 포함하여 총 56명이 참가하였다. 마지막 날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과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은 있었지만 시의 적절한 내용과 원활한 진행에 대해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였다.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일부 강의가 내용 면에서 중복되고 시청각 자료가 부족하여 다소 지루하였던 점을 지적하였으며 연수와 현장실습 간의 연계 필요성과 향후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가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주거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요구하였다.

4. 주거복지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현재 학회 인증의 민간자격으로서 주거복지사 자격제도가 시작되긴 하였지만 본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실현전략”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가 여러 가지 있다. 특히 주거 복지 정책 자체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해야 함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 일환으로 우선 해결이 필요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해본다.

첫째, 주거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주택정책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념 규명과 정립은 주거복지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주거 또는 주거문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거학계에서는 주거복지 개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복지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테두리 안에서 주거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거복지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규정된다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인력 양성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주거

복지사 제도의 정착과 함께 주거복지 정책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복지사 양성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본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상담사 재교육을 통한 주거복지사의 양성 외에도 민간기관 종사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추가 보수교육을 통한 주거복지사 양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관 종사자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주택분야 NGO, 그 밖에 사회복지학이나 생활과학 등의 관련 분야 전공자,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거복지 관련 담당기관의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다. 다른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주거복지 사업 또한 개별 수혜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대면적 상호관계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인력 확충은 매우 시급하다.